

주요 고용보험 일지

연 월 일	주 요 내 용
1998. 10. 23.	노동부, 고용보험사무조합 등 고용보험 설명회 개최 - 대상 : 사업주단체
1998. 11. 6.	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발족
1998. 11. 9.	노동부,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- 안건 :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7건
1998. 11. 24.	노동부,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- 안건 :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10건
1998. 11. 30.	고용보험동향 가을호(고용보험연구센터)
1998. 12. 7.	노동부,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- 안건 :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38건
1998. 12. 14.	노동부,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개정고시 - 임금체불로 이직한 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계속하여 이직하는 자로 정함.
1998. 12. 14.	노동부,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고시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- 시행일 : 1998년 10월 1일
1998. 12. 16.	한국노동연구원, 고용보험의 경험보험료제도 도입방안(김원식) 발간
1998. 12. 18.	한국노동연구원,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및 실태조사보고(허재준) 발간
1998. 12. 22.	노동부,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개최 - 안건 : 고용보험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재결 18건
1998. 12. 31.	노동부,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지정 고시 - 실시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3월 31일

연 월 일	주 요 내 용
1998. 12. 31.	노동부,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지정 고시 - 지정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1998. 12. 31.	노동부, 고용유지 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기간 지정 고시 - 지정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1998. 12. 31.	노동부, 1999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등의 고시 - 고용보험법 규정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1999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34천만원 미만,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1,534,881원 -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1998. 12. 31.	노동부, 무급휴직지원금액(무급휴직 1인당/월) 고시 -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만원, 대규모기업은 12만원 -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1998. 12. 31.	노동부,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- 육아휴직(육아휴직 1인당/월) :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만원, 대규모기업은 12만원 - 재고용(1인당 1회 지원) · 제조업 :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백만원, 대규모기업은 160만원 · 비제조업 :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60만원, 대규모기업은 120만원 -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1998. 12. 31.	노동부,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-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(1인당/분기) : 9만원 - 재고용시(1인당 1회 지원) · 제조업 : 우선지원대상지원기업은 160만원, 대규모기업은 120만원 · 비제조업 : 우선지원대상지원기업은 120만원, 대규모기업은 80만원 -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
연 월 일	주 요 내 용
1998. 12. 31.	노동부,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(1인당/월) 고시 -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액 :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, 대규모기업 55만원 -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1998. 12. 31.	노동부, 고용유지지원금(훈련)지급기준 고시 - 고용유지조치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 또는 기준 외 훈련을 집체훈련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(위탁훈련비)에 훈련수로인원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(합숙훈련시 훈련생 1인당 1일 5천원 추가) 지급 - 적용기간 : 1999년 1월 1일~1999년 12월 31일
1999. 1.	노동부, 채용장려금 지원금액 한도 고시 -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×100/50×30일의 산정액을 초과하지 못함 - 공포한 날부터 시행
1999. 4. 1.	노동부,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지정고시 - 실시기간 : 1999년 4월 1일~1999년 12월 31일